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42
----------	-------

발의연월일 : 2026. 8. 11.

발 의 자 : 김현정 · 김남근 · 강준현
박홍배 · 양부남 · 이훈기
손명수 · 민병덕 · 문금주
김동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1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바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의 위험평가액(이하 이 항에서 “위험평가액”이라 한다)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추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11조제1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22조제1항, 제2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4조제9호의2 중 “제81조제5항”을 “제81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 제90호 중 “제81조제1항·제5항”을 “제81조제1항·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9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0의2. 제81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여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한 경우

별표 2 제2호 중 “제81조제1항·제5항”을 “제81조제1항·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1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여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 ④ (생략) <u><신설></u>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바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의 위험평가 액(이하 이 항에서 “위험평가 액”이라 한다)이 각 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80 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 하여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 액 대비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 한을 낮추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u> ⑥ <u>제5항의 명령에 따라 집합 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u>
<u><신설></u>	

⑤ (생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9의2. 제81조제5항(제7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 29. (생략)	<u>용할 때에는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11조제1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22조제1항, 제2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44조(벌칙) -----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81조제7항----- ----- ----- ----- ----- 10. ~ 29. (현행과 같음)
--	---